



## “공익법인 세제 혜택 상한선 올려야”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공인회계사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국가 전반에 걸쳐 교육, 장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야에서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을 재원으로 정부의 대체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 사회 시스템이 보다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상증세법〉은 공익법인 등에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액의 한도를 주식 발행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로 제한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으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물론 주식 기부가 가져오는 역기능도 존재한다.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가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공정거래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될 뿐이다. 또 부동산이나 금전채권 등 다른 재산들은 전액 과세가액 불산입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 기부에 대해서만 그 10분의 1 또는 20분의 1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세제 혜택의 상한을 높이고, 그 대신 약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출연자가 자신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공익법인에 대해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 출연일 당시 공익법인의 이사가 아니며, 출연을 전제로 출연일 이후에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아니며, 공익법인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과 직접 또는 이들이 경영하는 법인과 거래를 하지 않으며, 그 외 특수관계가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도록 하고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예컨대, 의무지출제도,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타 각종 공시 의무의 부여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의 상한을 30% 수준까지 상향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